

## 4. 農地法施行令中改正令(案) 立法豫告

農林部 公告 第1996-72號 1996. 10. 26

### 주요 골자

가. 공장등 산업시설을 공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숙박시설·음식점·공동주택등을 농지 한가운데에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시설과 농지편입면적을 조정함.

- 숙박시설·호화음식점등

• 현 행 : 3만㎡ 초과

• 개정안 : 500㎡ 초과

- 근린생활·공공시설 등

• 현 행 : 3만㎡ 초과

• 개정안 : 1천㎡ 초과

- 공장·판매시설·창고 등

• 현 행 : 3만㎡ 초과

• 개정안 : 2천㎡ 초과

- 공동주택

• 현 행 : 1만㎡ 초과

• 개정안 : 5천㎡ 초과

- 교육연구시설등 기타시설

• 현 행 : 3만㎡ 초과

• 개정안 : 1만㎡ 초과

나.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용시설은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작물재배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을 우량농지 한가운데 설치하고 이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마을회관·축사·농업인주택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함.

다. 공업단지의 분양가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개별공장을 계획 입지로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농지조성비 : 전액부과→100% 면제

－농지전용부담금

· 국가·지방공업단지 : 70% 면제→100% 면제

· 민간공업단지 : 50% 면제→100% 면제

라. 제조업체의 업종변경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한 제조업체가 유사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면제하는 등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농지전용시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

마.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지를 70% 이상 활용하여 주택·공단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는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범위를 조정함.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시·도지사

· 현 행 : 3만㎡ 이상

· 개정안 : 1,500㎡~2만㎡ 미만

－시장·군수

· 현 행 : 3천㎡ 이상

· 개정안 : 1,500㎡ 미만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시·도지사

· 현 행 : 1만㎡ 이상

· 개선안 : 5천㎡ ~5만㎡ 미만

- 시장·군수

- 현 행 : 1만㎡ 이상
- 개선안 : 5천㎡ 미만

### 개정 이유

신규토지 공급확대를 위해 1994년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준농림지역을 신설하여 농지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개발가능지가 늘어나 토지공급은 원활하게 되었으나, 준농림지역 농지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산업시설 등은 가급적 계획입지와 산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농지를 보전함으로써 쌀 등 잡곡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업단지의 개발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등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0절(A4)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농림부장관(참조: 농지관리과장, 전화: 503-7264, 500-2635,

FAX: 507-39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택회보